

공지사항

제목: 행정자치부 “원가계산용역기관의 구성인력 요건10인 중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6인을 추가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중 구성인력을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관련조문 발췌 참조)

[시행 2016. 10. 6.][행정자치부 예규 제67호, 2016. 10. 4, 일부개정]

[시행 2016. 10. 6.][행정자치부 예규 제67호, 2016. 10. 4,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 정 자 치 부

목 차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
제1절 총 칙	2
제2절 내역입찰 집행	9
제3절 지명입찰업체 선정	11
제4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	12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15
제6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18
제7절 실비 산정	26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29
제9절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	30
<u>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u>	35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75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109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120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143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155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172
제9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193
제10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201
제11장 입찰 유의서	210
제12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226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227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268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290
제16장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운영요령	307
부 칙	318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제2관 제조 원가계산

제3관 공사 원가계산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제5관 그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제6절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제2관 표준시장단가 원가계산

제7절 원가계산 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제2관 원가검토기관

제8절 보칙

제7절 원가계산 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1.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용역대상기관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3) 「민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4)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다. 용역기관 요건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과 원가 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하 “경력”이라 함)이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4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 자격 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 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 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그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 이하로 한다.

-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2관 원가검토기관

1. 원가검토기관 요건

가.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이하 “원가검토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원가검토대상기관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 3) 「민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4)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다.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 6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3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 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이하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라. 원가검토기관의 사무위탁 범위

-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 2)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과업이행요청서, 법 제22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과 관련된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검토
- 3)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가계산과 예정가격 작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